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장규권 의원 발의]

의안번호 2262

발의일자 : 2022. 11. 10.

발 의 자 : 장규권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고영찬 의원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(2022. 1. 13. 시행)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보상금 지급 조건 중 '직무'의 범위가 확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).

나.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조건 중 직무 범위 변경사항을 반영함(안 제2조제1호).

구분		지방자치법	
개 정 전	제34조제1항	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(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)로 인하여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	
현 행	제42조제1항	지방의회의원이 <u>직무</u> 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 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 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	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자치법」제42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37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기 타

1) 현행 조례 : 별도 첨부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도 첨부

3) 입법예고 : 2022. 11. 11. ~ 11. 17.

4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같은 법 시행령 제39조"를 "같은 법 시행령 제37조"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이라함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"를 "이라함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"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의원이었던 자"를 "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 이었던 사람"으로, ", 자녀, 부모"를 "·자녀·부모"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4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"상해, 질병"을 "상해·질병"으로 하고, 같은 호 및 제2호 중 "구의원"을 각각 "의원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"금천구 의회의장"을 "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"으로, "경유하여"를 "경유하여 서울특별시"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"(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구성)"을 "(심의회의 구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위하여"를 "위하여 서울특별시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"의회의원중"을 "의원 중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의회의원"을 "의원"으로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	제1조(목적)
치법」 제42조 및 <u>같은 법 시행</u>	같은 법 시행
<u>령 제39조</u> 의 규정에 따라 서울	<u>령 제37조</u>
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직무	
상 사망・장애・상해에 대한 보	
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	
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	
다.	
1. "직무"라 함은 서울특별시 금	<u><삭 제></u>
천구의회 의원(이하 "의회의	
원"이라 한다)이 회기(「지방	
자치법」제70조제1항 단서의	
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위원회	
포함)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	
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	
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	
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	
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	
2. "의정활동비" <u>이라함은「지방</u>	2 <u>이라함은「지방</u>
자치법 시행령」제36조의 규	자치법 시행령」제33조
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	
다.	
3. "유족"이라 함은 <u>의원이었던</u>	3 <u>서울특별시</u>

<u>자</u>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 다), 자녀, 부모를 말한다.

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보상금 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 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<u>기타</u>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
- ② (생략)
- 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 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 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, 그 금액은 제 2호 또 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 - 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 상 <u>상해, 질병</u>으로 인한 사망 의 경우는 <u>구의원</u>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

금천구의회 의원(이하"의원"					
이라 한다)이었던 사람					
<u>·자녀·부모</u>					
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					
1. ~ 3. (현행과 같음)					
4. 그 밖에					
② (현행과 같음)					
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					
,					
1					
<u>상해 • 질병</u>					
의원					

- 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<u>구의원</u> 당해년도 의정 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 액
- 3. <u>기타</u>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,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.
- ② (생략)

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 (생 략)

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 로부터 6월이내, 제2호의 경우 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 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 식에 의하여 금천구 의회의장 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을 경유 하여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 "이라 한다)에게 서면으로 청구 하여야 한다.

제9조(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구성) ①직무로 인한 사망·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<u>위하여</u> 금천구에심의회를 둔다.

의원
 3. <u>그 밖에</u>
·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 (현행과
같음)
②
<u>서울특별시 금천구</u>
<u>의회 의장</u> <u>경유하</u> 여 서울특별시
<u>.</u>
제9조(심의회의 구성) ①
위하여 서울특별시

2. -

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	2
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	
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	
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	
다.	
1. <u>의회의원중</u> 1인	1. <u>의원 중</u>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<u>의</u>	③ <u>의</u>
<u>회의원</u> 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	<u>원</u>
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	
아야 한다.	<u>.</u>

④ (생 략)

④ (현행과 같음)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[시행 2022. 1. 13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34호, 2022. 1. 12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'06.05.26, '08.04.08., 2016.5.10., 2022.1.12.〉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5.10.>

- 1. "직무"라 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(이하 "의회의원"이라 한다)이 회기(「지방자치법」제7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위원회 포함)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 〈개정 2022.1.12.〉
- 2. "의정활동비"이라함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. <개정 '06.05.26, '08.04.08, 2020.3.25, 2022.1.12.>
- 3. "유족"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), 자녀, 부모를 말한다.

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
- 2.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
- 3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〈개정 2020.3.25〉
- 4.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
- ② 제1항 각호의 "직무"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. <개정 2020.3.25>

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,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,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구의원 당해 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<개정 '06.05.26>

- 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구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<개정 '06.05.26>
- 3.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,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.
-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. 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"장애"란 「공무원 재해보상법시행령」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. 〈개정 2020.3.25〉
-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"상해"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.

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직무로 인한 사망, 직무상 상해 ·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:사망당시의 유족
- 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,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: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
-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,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금천구 의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을 경유하여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.
- 제7조(보상금의 지급결정) 보상금은 금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. 〈개정 2016.5.10.〉
- 제8조(보상금의 지급방법)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,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. <개정 2020.3.25>
-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.
- 제9조(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구성) ① 직무로 인한 사망·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천구에 심의회를 둔다. 〈개정 2016.5.10.〉
-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20.3.25>
- 1. 의회의원중 1인
- 2. 관련국장 1인
- 3. 의무직 공무원 1인
- 4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
-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-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. 〈신설 2020.3.25〉

제10조(심의회 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
- 2.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
- 3.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
- 4.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

제11조(심의회 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하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0.3.25>

[종전 제12조에서 제11조로 이동, 2020.3.25]

제12조(심의회 회의)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〈단서 신설 2020.3.25〉
- ④ 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. 〈신설 2020.3.25〉

[종전 제13조에서 제12조로 이동, 2020.3.25]

제13조(심의회의 간사)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금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.

[종전 제14조에서 제13조로 이동, 2020.3.25]

제14조(심의회의 수당)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, 여비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[종전 제15조에서 제14조로 이동, 2020.3.25]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5.10.04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0.03.21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6.05.26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

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2008.04.08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865호, 2016.5.10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1094호, 2020.3.25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1234호, 2022.1.12.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	
-----------	--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42조(상해·사망 등의 보상) ① <u>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</u>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[시행 2022. 1. 13.] [대통령령 제32294호, 2021. 12. 31., 타법개정]

제33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 1. ~ 3. (생략)

제37조(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절차)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. 이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,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- 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: 시·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
- 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: 시·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
- 3.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: 치료비 전액. 다만,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.

-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지방자치단체의 장의</u>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보상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시·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(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)로,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으로 한다.
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1.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
- 2.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
- 3. 의무직공무원 1명
- 4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
-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.
-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.
-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